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9 | 2026. 9. 14. (2026. 9. 7. ~ 2026. 9. 1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①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②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③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④관리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과제로 ①AI 혁신서비스 발굴, ②AI 시티 인프라 구축, ③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④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그리고 ⑤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교육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을 정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제3자 매각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4인)**」 ,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초상·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

냉매의 제조·수입·판매,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8인)**」 ,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7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17.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법사위>, <재경위>, <국방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등에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산업통상부) 8
- 「K-AI 시티 실행전략」 발표(국토교통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1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1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11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2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3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3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17
-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4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3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2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24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5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7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2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 ·	28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	2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3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3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3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3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3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김종민·정혜경의원 등 10인) 3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8인)	34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3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7인)	35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김종양의원 등 19인)	35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조세]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출범과 기업 대응 관련 시사점 - 수출입·원산지 자료와 정부지원·공공조달·자본시장 정보의 연계 분석 강화 -
- [노동]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 7개 국회 통과 - 발전설비 계통접속 및 전력망 확충 제도 개편 -
-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3호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8. 26. - 2026. 9. 8.)
- [금융] 디지털금융 ISSUES (2026. 8. 26. - 2026. 9. 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 ①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②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③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④ 관리제도 개선

2026-09-10

산업통상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음

전국에 설립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23~'25)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대출 중단·시세 하락 등으로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음. 정부는 그간 입주가능 업종 확대(78→95개),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식산업센터 공실·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①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②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③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④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를 개편함

① 수급 조절 프로세스 구축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함.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설립 신청시 시·군·구 지자체장이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식적 요건을 위주로만 판단하여 승인되어 왔음. 이에, 산업부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설립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지식산업센터 분포 및 공실·미분양 현황, ▲인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임('26.下).

②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공실·미분양 물량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 창출에 나섬. 공공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활용하되, 수도권은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중기부)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산업부)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도록 추진함

③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 입주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업종만 허용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입주가 제한되고, 업종 분류가 모호한 융복합 신산업의 입주가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함(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④ 관리제도 개선

2010년 지식·정보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입했던 ‘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을 AI·디지털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 변경시 새로운 명칭 아이디어 등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산단 내·외 관리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지 간 형평성을 확보함.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초기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잡한 입주계약 절차를 ‘입주신고’로 간소화함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추후 예측하지 못한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감지될 경우 규제완화 조치 재검토 등 필요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토교통부

「K-AI 시티 실행전략」 발표

- AI 서비스·인프라부터 국내외 확산과 법·제도까지 5대 핵심과제 제시
- '27년까지 기반 마련, '30년 전후 시범도시 성과 창출·본격 확산

2026-09-09

국토교통부는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음.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5대 핵심과제로 ①AI 혁신서비스 발굴, ②AI 시티 인프라 구축, ③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④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그리고 ⑤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음

① (AI 혁신서비스 발굴)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 기업 공모를 통해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 또,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

② (AI시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서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도록 지원

③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가 가져오는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

④ **(K-AI시티 선도모델 확산)**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을 개설·운영하여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

⑤ **(법·제도 기반 마련)**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27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1 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29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체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되,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기체계 구매사업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착수 지연을 예방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1 시행
-----	-------------------------------	---------------

정부가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0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 또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1 시행
-----	----------------------	---------------

방위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3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의 작성 등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과 이행점검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계획 위반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비용 보조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9-11 시행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22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범위,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7-03-09 시행 예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는 등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7-03-09 시행 예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설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 증가로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여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크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사업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의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 의제와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사비 분쟁해결 및 조합의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한시 완화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7-09-09 시행 예정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7-03-09 시행 예정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공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으며, 대체로 입지가 우수하고 저밀도로 조성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큼

이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심 내에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27-03-09 시행 예정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7-01-01 시행 예정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추가하고,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 발주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추가하는 등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7-03-09 시행 예정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시기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9-09 시행 예정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한편,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9-09 시행 예정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가 접수된 날’로 명확히 하고,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9-09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2-09 시행 예정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 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07. ~2026.10.19.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66호, 2024.12.30.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져 이로 인한 학생 유발을 고려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법률 제21722호, 2026.12.3.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①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수정함 (안 제1조의2)
- ②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산정기준, 납부 방법, 용도, 납부시기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의4)

※ 문의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643, 팩스: 044-203-6490\)](tel:044-203-6643)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2026.09.10. ~2026.10.21.
-------	----------------	-----------------------------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25.11~ '26.1),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거나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벌칙규정은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제3자 매각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3제7호 개정 및 제57조의3제8호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전화: 044-201-4445, 팩스: 044-201-5572\)](tel:044-201-4445)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0.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되어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행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mailto:land@korea.go.kr) (전화: 044-201-3409, 팩스: 044-201-553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2026-09-09 발의
---------	---	---------------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재정비하여 연서 고발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서 고발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수사 보고 절차상의 입법적 공백을 완화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의원 등 10인)	2026-09-07 발의
-------	--------------------------------	---------------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2026-09-08 발의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간인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5조제2호)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2026-09-08 발의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 치매환자 등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어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적·맞춤형 자산관리가 어렵다는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담보권,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 등까지 확대하여 신탁업의 종합적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 수탁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층, 치매환자 등을 수익자로 하면서 수익자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병원·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에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탁업자의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혁신성은 있으나 자산규모나 신용도가 낮은 비상장 중소기업 등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여 혁신성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며, 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2026-09-09 발의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2026-09-09 발의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여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의 상장 결정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09-10 발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지정제도와 회계 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2026-09-11 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118조의2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2026-09-09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산이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낮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최근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 등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및 냉방 휴게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폭염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졸업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7, 대기업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9-09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4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2026-09-10 발의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수단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품의 유통이 제한되어 신속한 유통 촉진이 어려움

이에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2026-09-10 발의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2026-09-07 발의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2026-09-09 발의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09-08 발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조기탐지·신속대응·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2026-09-10 발의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인력 확보 한계 등으로 여전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3조부터 제35까지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6-09-10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모사·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인지도와 신뢰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피해가 반복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2026-09-07 발의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026-09-07 발의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의 해결, 시험·검증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2026-09-07 발의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부적정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1월 무분별한 성·복토 등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법 성·복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최종 사용처인 농지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불법 성·복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폐기물이 재활용 물질·제품의 형태로 공급·사용되는 과정과 실제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

2026-09-08 발의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와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

2026-09-08 발의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와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026-09-08 발의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용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하여 왔으나, 에너지·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적응·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기후·에너지·자원 분야의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차질 없이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안 제69조제2항, 제70조,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2026-09-10 발의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6-09-10 발의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수입·판매·사용·회수·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냉매의 제조·수입·판매,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9-11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의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하여 분할사용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2026-09-07 발의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행정 관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오염토, 건설 폐기물,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어버리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 매립은 토지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2026-09-08 발의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성토·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큼

그러나 불법 성·복토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혈세 낭비)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60조 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026-09-08 발의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2026-09-08 발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0인)**

2026-09-08 발의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8인)

2026-09-09 발의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써,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2026-09-10 발의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 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7인)

2026-09-10 발의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피난·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김종양의원 등 19인)

2026-09-10 발의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32조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2026-09-11 발의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 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14(월) 10:00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9/17(목) 10: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9/14(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9/15(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재경위	전체회의	9/15(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
과방위	전체회의	9/15(화) 11:30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법안 상정 및 의결
	정보통신 법안소위	9/15(화) 11:40	- 법안 심사
	과학기술 법안소위	9/16(수) 15:00	- 법안 심사
	예산결산소위	9/18(금)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9/16(수) 10:00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회
문체위	전체회의	9/16(수) 10:00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법안 상정 및 의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9/15(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복지위	법안2소위	9/15(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9/16(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17(목) 10:00	- 법안 의결,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토위	전체회의	9/16(수) 10:00	-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14(월) 10:00	UAM 초기 상용화 정책 토론회	장종태·정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4(월) 10:00	중국의 반도체 굴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박덕흠·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4(월) 14:00	韓·日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권영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4(월) 15:30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한정애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9/15(화) 10:00	(메탄 감축 목표 이행 및 NDC 달성을 위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김소희·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9/15(화) 14:00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과 정책 과제	강명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16(수) 10:00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3차-재생에너지 국산화 전략 방안	박정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9/16(수) 14:00	대·중소 상생 AI기반 콘텐츠 커머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16(수) 14:00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	이용우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9/17(목) 10:00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이상휘·여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7(목) 10:30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재관·서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9/18(금) 10:00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윤한홍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18(금) 14:00	한국형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회 세 미나	서삼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9/14(월)	「Data+」 제2026-14호(통권 제38호)	국회도서관	
	9/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8호(통권 제306호)		
	9/16(수)	「금주의 서평」 제2026-36호(통권 제795호)		
	9/17(목)	「금주의 World Law」 제2026-36호(통권 제36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9(수)	「Data&Law」 제2026-11호(통권 제49호)	국회도서관	
	9/9(수)	「금주의 서평」 제2026-35호(통권 제794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7(월)	조세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출범과 기업 대응 관련 시사점 - 수출입·원산지 자료와 정부지원·공공조달·자본시장 정보의 연계 분석 강화 -
9/8(화)	노동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9/9(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9/10(목)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 7개 국회 통과 - 발전설비 계통 접속 및 전력망 확충 제도 개편 -
9/11(금)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3호
9/11(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8. 26. - 2026. 9. 8.)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